

##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」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을 말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